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679호

시행일자 2018. 5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
안내

1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1호(2018.5.31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5호(2018.5.31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97호, 2018.5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1호, 2018.5.31.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1호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)

○ 주요내용

- 한방병원 중별가산을 적용기준 신설
-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
-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-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

○ 시행일 : 2018.6.1.부터

(다만,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관련은 2018. 7. 1부터)

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5호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정정))

○ 주요내용 : 미량알부민검사 차구 수정

○ 시행일 : 2018.6.1.부터

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
2. 한방병원 중별가산 관련 질의응답 1부.

3. 주사제 무균조제료 관련 질의응답 1부.

4. 개정 고시문 (정정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